

사단법인 한국잠수협회 정관

개정 : 2000. 1. 8.

개정 : 2001. 4. 18.

개정 : 2002.10. 9.

개정 : 2003. 9. 17.

개정 : 2016.12. 20.

개정 : 2017. 2. 13.

개정 : 2017. 3. 28.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잠수협회(이하 “본 협회”라 칭한다)라 칭하고 외국에 대하여는 KOREA UNDERWATER DIVING ASSOCIATION(약칭 KUDA)이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협회는 잠수 및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연구·수련 및 안전관리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통하여 국민체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스포츠 풍토를 조성하여 산하단체를 지도 양성하고 수중자연보호 활동을 전개하여 국가 발전과 국민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전국 시·도·구·군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한다.

제 4조(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수중자연보호활동
2. 해양생태에 관한 연구조사를 위한 국내외 조사대 파견.
3. 회원단체의 지도 및 지원
4. 잠수의 홍보계몽 및 간행물 발간
5. 잠수관련 국내외 대회의 개최, 주관 및 참가
6. 잠수교실 운영에 따른 교재 발행 및 교육 후 등급 심사
7. 잠수지도자 양성 및 회원 자격증 발급에 따른 회원제 운영
8. 잠수(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수상 및 수중안전관리 운영
9. 수중시설물에 관한 연구와 설치 및 관리 운영
10. 수상인명구조요원 교육 및 자격증 발급
11. 어장 정화를 위한 청소 및 제반시설 관리
12. 잠수 및 해양레저에 필요한 용구의 보급과 규격공인, 교육, 인증
13. 독도 등 해양영토 홍보, 수호운동 및 해양문화재 보전, 관리, 연구
14.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본 협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 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협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1. 초급회원 :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잠수경력 1년 미만인자.
선거권이 없다.
2. 일반회원 :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선거권이 없다.
3. 지도자회원 : 본 협회의 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
대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4. 평생회원 : 일반회원 및 지도자회원으로 소정의 평생회원 회비를 납부한자.
5. 특별회원 : 이사회 의결로 추대한다.
6. 명예회원 : 이사회 의결로 추대한다.

제 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

1. 지도자회원은 대의원에 피선될 수 있다.
2. 본 협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본 협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본 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5. 본 협회가 정한 회원 우대 제도의 혜택을 누린다.
6. 정관 제 4조 7호 및 10호에 따라서 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7. 지도자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지부는 지부장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 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갖는다.

1. 본 협회의 정관, 제반규정, 회원규정 및 의결된 사항을 준수한다.
2. 소정의 회비 및 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3. 총회 및 이사회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9조(가입 및 제적) 본 협회 소정의 가입 신청서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0조(탈퇴) 본 협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는 본 협회 이사회의 의결로서 확정된다.

제 3 장 지부

제11조(가입자격 및 제적) ① 본 협회에 가입자격 및 제적은 본 협회 이사회 의결에 따르며, 이사회는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부실한 지부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제적 할 수 있다.

- 제12조(권리)** ① 승인된 지부의 지부장은 대의원 총회에 대의원 1인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기타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준칙에 따른다.

제13조(의무)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갖는다.

1.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본 협회의 규정 및 준칙과 세칙에 따른다.
2.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조직, 정원, 각종 규정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본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 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회는 다음 각 항의 임원 및 기관을 둔다

- ① 선임임원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3인 이내
 3. 이 사 2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 사 2인
- ② 위촉임원
 1. 명예회장 1인
 2. 고 문 약간인(역대회장 포함)
 3. 자문위원 약간인
 4. 위 원 전문위원회 규정에 정한 인원
- ③ 대의원 : 대의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중앙회 대의원 : 선임 임원 20인 이내
 2. 지부대의원 : 승인된 지부의 지부장 30인 이내
 3. 지도자대의원 : 지도자위원회에서 선출된 지도자 20인 이내

제15조(임원의 선임 및 제한) ①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에서 승인받아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④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임기는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③ 회장, 감사를 제외한 이사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한다.
- ④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의 임기와 같다. 다만, 이사의 보선을 실시한 경우에는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⑥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3년으로 한다. 단, 임원, 지부장, 지도자의 자격이 상실될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 또한 상실된다.

⑦ 위촉 임원의 임기는 선임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17조(선임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② 본 협회의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가급적 이사로 선임하도록 한다.

③ 기타 선임 임원의 자격 및 선출 방법 등의 세부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8조(대의원 및 위촉임원의 선출방법) ① 중앙대의원은 선임임원으로 한다.

② 회원단체의 지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하며, 본 협회 이사회에서 문서로 선임한다.

③ 지도자 위원회에서는 활동성 지도자 중에서 3년 이상된 자 중 20인 이내로 선임한다.

④ 제14조 ②항의 위촉임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되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⑤ 기타 대의원의 자격 및 선출방법 등의 세부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회장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이 결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이사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⑥ 회장은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⑦ 위촉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이사회 의 자문 역할을 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0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협회 의 재산 및 행정업무 상황을 감사한다.

2. 총회 및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한다.

3. 위 제1호 및 제2호 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4. 제3호 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한다.

5. 본 협회 의 재산 및 행정업무 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제21조(임원 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 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시 재적이사 ⅔ 이상의 동의에 따라 임기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7. 본 협회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해임된 임원은 재신임할 수 없다.

제22조(임원의 보수) ① 선임 및 위촉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임 임원에 대한 업무 추진비 및 임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이사회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대의원총회

제23조(구성)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칭한다)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자로서 제14조 ③항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의결사항)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의결 기관으로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승인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
5. 정관규정에 의해 대의원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25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한다.

② 총회소집은 부의 사항을 명기하여 7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②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의장의 의결권) ①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출석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② 임시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27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결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하므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되며 성원된 의원 2/3 이상이 참석할 경우에만 의결할 수 있다.

- ② 총회의 의결은 참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임장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표결권은 없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27조 ②항에 따라 소집된 경우는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안으로서 의장 또는 총회구성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30조(임원의 해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그 임원이 취임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 ② 해임안은 대의원 재적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제의되고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서 이를 결의한다.
- ③ 해임안이 결의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되며, 신임 임원을 선출하여 본 협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④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31조(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32조(의사규정)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6 장 이 사 회

제33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 협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34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회원단체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8.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9. 사무국의 지도 감독
10. 총회 부의사항의 작성 및 상정
11. 규정의 제정
12. 기타 중요사항

제35조(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수석부회장, 실무부회장 또는 출석 임원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에서 통지된 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6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하므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 의결은 참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위임장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표결권은 없다.

제38조(긴급처리 및 서면결의 금지)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② 이사회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7 장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39조(설치) ① 본 협회는 다음의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로서 둘 수 있다.

1. 교육위원회, 위원장 1인 위원 15인 이내
 2. 산업잠수위원회, 위원장 1인 위원 10인 이내
 3. 기술평가위원회, 위원장 1인 위원 10인 이내
 4. 지부위원회, 위원장 1인 위원 10인 이내
 5. 수중자연보호 위원회, 위원장 1인 위원 10인 이내
 6. 홍보위원회, 위원장 1인 위원 10인 이내
 7. 수중사진위원회, 위원장 1인 위원 10인 이내
 8. 사업위원회, 위원장 1인 위원 10인 이내
 9. 수난구조위원회, 위원장 1인 위원 10인 이내
 10. 기타 필요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 위원 10인 이내
- ②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 ③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이사회회의 자문기구이다.
- ④ 각 위원회의 의장은 이사회 추천에 의해 가급적 이사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 8 장 자산 및 회계

제40조(자산) 본 협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본 협회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2. 기금
3.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회비
5.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6. 행사참가비
7. 각종 공인수수료
8. 기부금 및 찬조금
9. 기타 수입금

제41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법인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금
3.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기부 및 출연된 재산과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이사회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4.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본 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재산관리) ① 제41조 제②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때,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③ 본 협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 5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3조(경비의 조달방법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회비, 기본재산의 과실, 보조금, 기부금(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44조(기금의 운영) ① 본 협회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전항의 기금은 특별회계로 하고 기금관리규정에 의거, 관리한다.

제45조(사업계획, 예산, 결산의 보고) ① 본 협회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회장이 이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작성하여 재산목록, 사업보고서 및 재산증감 사유서와 함께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6조(회계감사 및 회계연도) ①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9 장 사 무 국

제47조(사무국) ① 본 협회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48조(사무국 규정) ①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②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10 장 보 칙

제49조(표창 및 징계) 본 협회는 잠수계에 공적이 있는 지부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본회 소속 지부 또는 회원개인을 징계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50조(규정)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51조(정관개정) 이 정관의 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며 재적대의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2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53조(해산)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산한다.

1. 이사회와 총회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본 협회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협회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55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1979. 1. 31)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개정허가를 받은 날(2000. 1. 8)로부터 시행한다.
3.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개정허가를 받은 날(2001. 4. 18)로부터 시행한다.
4.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개정허가를 받은 날(2002. 10. 9)로부터 시행한다.
5.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개정허가를 받은 날(2003. 10. 6)로부터 시행한다.